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담당   IT검사국   담당자   안기복   연락처   02-3145-7429   부서   기본   102-3145-7429
요청대상 행위	□ 금융회사가 가맹점 계약서 등 관리를 위하여 OCR 및 신분증 진유 여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협력업체의 서버와 내부 정보 처리시스템을 전용선 또는 VPN으로 연결하는 경우,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망분리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결대상이 되는 외부 협력업체의 서버가 온프레미스 환경의 물리적인 전산실 내 서버인 경우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이다른지 여부
판단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ul> <li>「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제2항제2호가목은 전자금융업무역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특정 외부기관과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형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외부통신망과의 물리적 망분리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li> <li>이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란 망분리 환경에서 전자금융업무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고, 업무 수행은 가능하나 불편 등을 개성하기 위해 망분리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규정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조치의견서 170012)</li> <li>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기능 개발 곤란 등 사유로 외부통신망을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하는 것은 업무상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어서 동호가목에서 정하는 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li> <li>② 상기사항은 외부 협력업체의 전산실이 클라우드 환경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li> </ul>

-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 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 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